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01

발의연월일 : 2020. 11. 9.

발 의 자:김승원·조승래·오영환

강선우・도종환・홍기원

이성만 · 임호선 · 이소영

이규민 • 박광온 • 한병도

의원(12인)

제안이유

급식시설과 관련한 현행 법령에서는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의 급식과 1회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1,004개소 중 83.4%에 해당하는 9,177 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의 영양관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9.18. 기준 7개 지자체 (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의 307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시범사업 결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에 대한 종합만족도가 83.8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시 지원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82%에 달함.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다.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 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 식관리지원센터,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감독·지도 및 실 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영양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 2. "영양취약계층 급식"이란 영양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영양취약계층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 ② 영양취약계층 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사회 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영양취약계층의 건강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보급
 - 2. 영양취약계층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이하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이라 한다)의 표준모델 및 운영기준의 개발·보급
 - 3. 영양취약계층 급식의 영양·위생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4. 영양취약계층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 · 연구
 - 5.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보급
 - 6.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7.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영양취약계층 급식의 영양 •위생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영양·위생관 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2.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영양사의 순회방문과 현장지도
- 3. 영양ㆍ위생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4.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5. 그 밖에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라 한다)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취약계층 급식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급 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영양취 약계층 급식시설의 급식 인원수와 영양·위생관리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7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취약계 층 급식시설에 대한 영양·위생관리 지원 업무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감독·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취약계층 급식 현황에 관한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양취약계층 급식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공공기관의 장, 영양취약계층 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 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 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